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6-6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 2. 법 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
- 3. 처 분 내 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 4. 처 분 일 자: 2026. 7. 3.(금)
- 5. 대 상: 처분통지 불능 무선국 내역 참조
- 6. 참 고 사 항

가. 운용정지 기간 중에 검사기관[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필증을 교부받을 시 운용정지 처분이 해제(2차 위반의 경우 운용정지 기간 이후 해제)됩니다.

나. 운용정지 기간 만료 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검사필증을 교부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된 무선국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전파법에 의거 처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무선국을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신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www.emsit.go.kr]

라.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2-2680-17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분통지 불능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1	41-2020-10-0000094	125성지호	이○용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512번길	정기검사 불이행(1차)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42-2014-30-0000222	601금어호	현대마린개발(주) 대표이사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166번길	정기검사 불이행(1차)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